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중 '임시기준' 제도에 관하여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 1. 들어가며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제정 취지에 관하여 제1조에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주로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이하 “메타버스”라 함)와 관련된 산업(이하 “메타버스산업”이라 함)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조항들도 있지만, 메타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으로 규제 개선에 관한 조항도 두고 있음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규제 개선’을 중요한 주제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유는 메타버스기술\*이나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나 기기·상품 등(이하 “메타버스서비스등”이라 함)이 타산업 또는 타산업의 서비스, 기기·상품 등과 융복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개선 체계(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함(법안 제2조 제1호 참조)
- 법안 중 규제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법안 제4조), ②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법안 제6조 제3항 제4호), ③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법안 제8조), ④ 마지막으로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법안 제2조 제5호, 제29조, 제30조).
- 이 중 “임시기준” 제도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에 새로 도입되는 독특한 제도로서, 현재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규제개선 프로세스의 한계를 넘어 규제개선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임

## 2. 임시기준 제도와 유사한 제도들

### 가. 규제 샌드박스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임시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시간·장소·규모)하에서 규제를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함
- 우리나라도 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신속처리와 임시허가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활용이 극히 미진하던 중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게 되면서 2019. 1. 17.부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되게 되었음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해당 규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신청자에 한하여 엄격한 조건 하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관 부처의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금융샌드박스는 금융위원회)이 해당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인 반면, 임시기준 제도는 메타버스사업자의 제안 외에도 과기정통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협회등의 제안에 따라 관련 절차 개시가 가능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기준을 마련하며, 효과도 신청자에 한하지 않고 관련 산업 전반에 효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나. 유권 해석

-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전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함(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 안내<sup>1)</sup>)
- 정부유권해석은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별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하고는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음
- 정부유권해석은 성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당 규정의 의미나 적

1)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6010000>

용범위 등에 관한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메타버스기술 또는 메타버스서비스등의 개발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상 근거 또는 기술기준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이 없거나 적용 가능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에 관한 임시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임시기준 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 다. 비조치의견서 제도

- 비조치의견서는 현재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는 제도로써,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 제4호)로써, 동 제도는 특정한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사후적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제도임(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님)
-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고(제5조),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제12조)
  1.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 금융당국의 공문등(「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현재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는 제도인 점, ②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정되어 있으며, ③ 구체적·개별적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임시기준과는 구분됨
- 참고로,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원칙 기반 규율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AI 관련 신속한 법령해석과 (가칭)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

원회,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18면 참조). 여기서 말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란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 요청에 따라 사전에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서 비조치의 견서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라. 적극행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함(동 규정 제2조 제1호)
  - 이에 반대되는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동 규정 제2조 제2호)
-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무를 행함에 있어 기존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전례가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 적극행정과 임시기준 제도 모두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목적 측면에서는 같지만, 적극행정은 평균적·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개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국민이 현행 규제의 내용을 잘 몰라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메타버스기술 또는 메타버스서비스등의 개발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상 근거 또는 기술기준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이 없거나 적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메타버스산업 분야에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만드는 임시기준과는 차이가 있음

## 마. 옴브즈만 제도

-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그들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불만과 고충 등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해주는 대리인’<sup>2)</sup> 또는 행정권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며,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함<sup>3)</sup>
  - 옴부즈만 제도 초기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보의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이나 권리침해를 다루는 일반 옴부즈만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특정 분야의 민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옴부즈만”도 채택되고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있음
-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경우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로는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③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있음
- 옴부즈만은 행정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예방 등이 주된 업무인 점, 규제정비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는 반면 임시기준은 메타버스산업과 관련되어 있으면 기업의 규모는 불문하는 점, 옴부즈만은 개별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관련 기술 또는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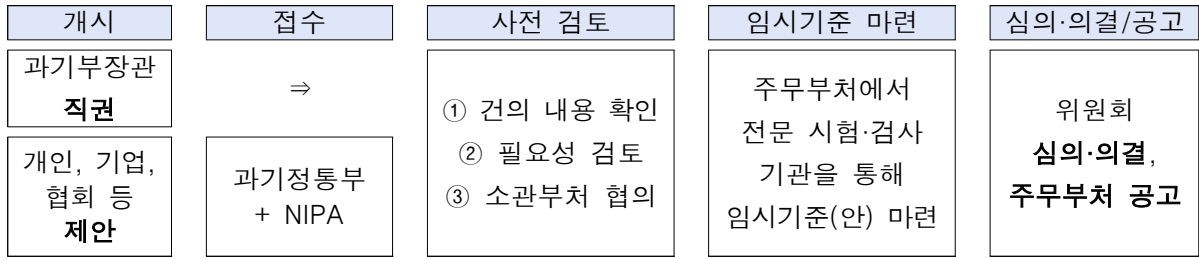
2) 강희은, 옴부즈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59면

3)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2020500>

## □ 임시기준 제도와 규제 샌드박스의 차이점

- 임시기준 제도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임시허가' 제도와 명칭이 유사한 관계로 임시기준 제도에 관한 조항을 규제 샌드박스 관련 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제도는 요건, 신청권자, 절차, 효과 등에 있어서 상이함
- (요건)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청한 구체적인 BM이나 시제품\*에 대해서 엄격한 조건(기간·장소·방법 등)하에 특례를 부여하는 반면
  - \* 현실적으로 시제품등의 준비 수준이 70% 이상이어야 심의가 가능
- 임시기준은 아직까지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모델이나 시제품이 없더라도 향후 산업적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신청자)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회사등 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금융혁신법),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규제자유특구법),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스마트도시법)로 한정되어 있으나(지역특구법의 경우에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례의 부여를 요청하면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함),
  - 임시기준은 메타버스사업자 외에 협회 또는 단체 등도 제안할 수 있고, 이러한 민간의 제안이 없더라도 산업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기부장관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음
- (절차) 사업자가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지정을 신청하면, 소관 부처·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심의 및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관 부처 장관이 특례를 부여하나(동일·유사과제의 경우에는 소위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여 서면검토로 갈음할 수 있음),
  - 임시기준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나 협회 등의 제안을 받아서 또는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임시기준 마련을 요청할 권한만 보유하고, 실제 임시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련한 후 '정보통신융합법'상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함

**【임시기준 마련 절차】**



- **(기준 규제와의 관계)**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인 반면,
    - 임시기준은 메타버스기술 또는 메타버스서비스등의 개발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상 근거 또는 기술기준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이 없거나 적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규제의 효력 자체를 배제하는 제도가 아님
  - **(효력)** 규제 샌드박스는 엄격한 조건 하에 일정한 기간(1차 유효기간: 2년 이내\*, 2차 유효기간: 2년 이내) 특례를 받은 신청기업의 해당 BM·제품 등에만 효력이 있지만
    - 임시기준은 관련 산업 전반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부가조건이 있을 때엔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다수의 기업이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개발·제공 가능
- \* 스마트도시법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1차 유효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스마트도시법 제51조 제2항)

**< 기업&사업모델별 적용범위 >**

구분	규제 샌드박스	임시기준
동일기업 & 동일제품·서비스	○	○
타기업 & 동일제품·서비스	x	○
동일기업 & 유사 제품·서비스	x	△

**※ 양 제도의 상호 운용성**

☑ 임시기준 대상 기업 중에서 특정 서비스·기기에 대해 특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규제 샌드박스’로 유도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양 제도의 상호 발전 가능

## □ 임시기준의 요건

- 임시기준은 메타버스기술 또는 메타버스서비스등의 개발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상 근거 또는 기술기준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이 없거나 적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메타버스산업 분야에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의미함(법안 제2조 제5호)

### ① 메타버스기술 또는 메타버스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이 있을 것

-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기준'은 모든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기술' 또는 '메타버스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
- 위에서 말한 ① '메타버스기술'이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하고(법안 제2조 제1호 참조), ② '메타버스서비스등'이란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나 기기·상품 등을 의미하며, ③ '개발등'이란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임대 등을 의미함(같은 조 제2호 참조)
- 메타버스기술 또는 메타버스서비스등이 다른 도메인의 기술이나 서비스등과 융복합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VR·AR·MR 등의 기술이나 기기를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음

### ②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이 없거나 적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할 것

- 메타버스기술이나 메타버스서비스등의 개발등을 위해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이 없거나(부존재),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불분명)를 요건으로 함
  - 임시기준은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사업자들이 따를 수 있는 임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이지 기존 법령의 효력을 폐지하거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님
  - 즉 현존하는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의 '불합리'까지 임시기준의 요건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 법령 등의 효력을 개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임시기준 제도의 취지를 넘어서는 점, 이러한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법령등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불합리' 요건을 배제하였음
- 기업의 규모 등은 기준이 아님



## □ 임시기준 마련 절차 (별첨 2 - 임시기준 마련 프로세스 참조)

- (직권 또는 제안) 임시기준 마련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메타버스사업자, 협회 등의 제안에 따라 개시됨(법안 제30조 제1항 본문)
  - 규제 샌드박스제도는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개시되는 점에 반해, 임시기준 마련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고, 메타버스사업자 외에 협회 등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협회 등'에는 대학, 연구기관,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 개인도 포함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권으로 개시하거나 협회 등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메타버스사업자들이 대부분 중소·벤처·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임시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더라도 인적·재정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으로 임시기준 마련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임
  -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임시기준 신청서에 임시기준의 내용, 필요성,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법안 제30조 제2항)
- (필요성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안을 받아 임시기준의 마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임시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법안 제30조 제1항 본문)
  - 기업의 민원성 제안은 '산업적 필요성'이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음
  - 내용에 따라서 해당 기업에게는 특례 부여가 필요하나 산업적 발전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기업에게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므로 '임시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권고할 수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임시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음(법안 제30조 제1항 본문)
  -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프레임워크의 성격을 갖는 점, 임시기준이 마련되면 해당 임시기준은 관련 산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점, 메타버스는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도메인 관련 규제의 개선 업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함

-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법안 제30조 제1항 단서)
- **(임시기준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임시기준 마련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임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함(동법 제30조 제3항 본문)
  -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시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임시기준 기술의 복잡성, 내용의 민감성 등에 따라 임시기준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다양할 것인 점, 동등한 지위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간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간 제한은 도입되지 않았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임시기준의 유효기간, 적용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음(법안 제30조 제4항)
-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심의·의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안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법안 제30조 제5항)
  - 전략위원회는 과기정통부 또는 제안자의 제안 내용, 과기정통부의 필요성 판단 내용, 임시기준 마련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 전문가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기준(안)의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
  - 전략위원회는 임시기준이 비록 법령은 아니지만 관련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적 파급효과나 이용자 보호 등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전략위원회는 임시기준에 대해 안전성 확보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시기준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험·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임시기준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임시기준을 공고하여야 함(법안 제30조 제6항)
  - 임시기준은 관련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 임시기준의 효과

- 임시기준은 관련 산업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효기간, 적용범위 등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음(법안 제30조 제4항)
  - 전략위원회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시기준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험·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경우에는 시험·검증 결과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
- 임시기준은 그 자체로는 법령이 아니므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음
- 임시기준은 메타버스기술 또는 메타버스서비스등의 개발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상 근거 또는 기술기준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법령 또는 기술기준 등이 없거나 적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메타버스산업 분야에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이므로, 법령의 효력을 개폐하는 것은 아님
  - 이 점에서 현존하는 규제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사업자에게만 일정한 조건 하에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와는 구별됨

##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우선 도입하는 이유

- 메타버스 산업은 그 자체로 기술적 발전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발전해야 하겠지만, 의료·교육·안전·교통·국방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이 필연적이고, 그 과정에서 해당 도메인과 관련된 규제개선 수요가 많을 것을 예상됨
  -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중 벤처·스타트업이 많은 점, 특정 기업에 대한 특례만으로는 신속한 산업 육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우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에 임시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1.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의 차이점

- 우선 규제 샌드박스는 구체적인 사업모델이나 시제품이 마련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모델이나 시제품에 대해서만 일정한 조건하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임에 반해, 임시기준은 아직까지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모델이나 시제품이 없으나 **향후 관련 산업 또는 사업모델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시적(時的) 범위가 상이**합니다.
- **판단 기준 측면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모델에 한해 특례를 부여함에 반하여, 임시기준 제도는 **산업적 측면에서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상이합니다.
- **신청자의 범위 측면에서**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 만 신청할 수 있으나, 임시기준에서는 **과기부장관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외에 개인, 협회 또는 단체 등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절차적 측면에서**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특례를 부여**하나, 임시기준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산업계의 제안에 따라 임시기준의 마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권한만** 보유하고 해당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기준을 마련한 후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음
- **효과적 측면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특례를 받은 해당 사업모델 또는 제품 등에만 효력이 있는 반면, 임시기준 제도는 **마련된 임시기준의 범위 내에서 다수의 기업이 동일·유사한 제품·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2. ‘임시허가’ 와 ‘임시기준’ 의 차이점

- ‘임시허가’ 는 **정보통신융합법상** 제도로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임시로 허가**등을 받아 해당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임시허가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의 특정 사업모델 또는 제품에 대한 개별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인 반면, 임시기준은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될 때까지 관련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임시적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3. 국회의 입법권이나 타부처의 권한 침해 여부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비록 특정사업자에 한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입법권 침해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다만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 반면, 임시기준은 기존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규를 직접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임시기준 제도는 관련 법령을 법령 개정 절차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할 때까지 행정부의 권한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목적론적 축소해석 등)하거나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법안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직권 또는 사업자 등의 제안을 받아 임시기준 마련 필요성을 1차로 검토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임시기준 마련을 요청 하도록 하였고,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기준(안)을 마련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임시기준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이나 타부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임시기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4. 안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대처 방안

- 위원회는 임시기준을 심의하고, 그 과정에서 임시기준에 대해 안전성 확보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시기준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험·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5. ‘임시기준’ 과 유사한 사례나 전례

- 임시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① 메타버스를 이용한 비대면진료시 갖추어야 할 통신이나 장비의 기준
    - 현재 비대면 진료에 관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나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② 메타버스와 게임물의 구분에 관한 기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의 범위<sup>4)</sup>를 축소하거나 구체화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게임성을 갖는 AR·VR 기기나 콘텐츠에 게임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
  - ③ 건축물이나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메타버스 서비스 기준
    - 현재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 사람이 직접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디지털트윈을 통해 안전점검을 할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
-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로는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이드라인<sup>5)</sup>을 통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sup>6)</sup>의 범위를 축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형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기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관련 고시는 제정되지 않았음

5)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6면

동 가이드라인은 ① 의료인의 교육·훈련 목적의 기기/소프트웨어, ② 일상적인 건강관리 목적의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기기/소프트웨어, ③ 기능성게임 등을 통해 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의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기기/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

6)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직권 개시 또는  
사업자등 제안**

- ▶ 과기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기준 마련 절차 개시
- ▶ 메타버스사업자, 협·단체가 임시기준 마련 제안
- ※ 전문가나 협·단체도 가능
- ※ 개별 기업 민원이 아닌 산업계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 대상

**필요성 검토**

- ▶ 과기부장관이 1차로 임시기준 마련 필요성 검토
- ※ 전문가를 통해 검토
- ▶ 필요성이 인정되면 절차 개시

**임시기준 마련  
요청**

- ▶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주무부처에게 임시기준 마련 요청
- ▶ 산업계 의견 청취

**위원회 보고**

- ▶ 임시기준(안)을 만든 주무부처는 그 내용을 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

**임시기준(안)**

- ▶ 주무부처에서 임시기준안 마련

**전문 시험·검사  
기관 의뢰**

- ▶ 주무부처는 부처협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전문 시험·검사 기관으로 하여금 기준이나 규격 등을 마련하도록 함

**위원회 심의**

- ▶ 위원회는 임시기준을 심의·의결
- \* 위원회는 필요시 시험, 검증 등 필요한 조치 권고 가능

**임시기준 공표**

- ▶ 주무부처에서 임시기준 대외적으로 공표
- ※ 규제정보포털에 게시 ([www.better.go.kr](http://www.better.go.kr))

**법령 정비 추진**

- ▶ 임시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